

# 성과공유시스템 운영 지침

제정 2025. 3. 13.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대학의 교육, 연구, 지식협력 및 재정지원사업 등의 성과를 학내외에 공유 확산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성과공유시스템의 운영·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

제2조(정의) ① ‘성과공유시스템’은 대학의 교육, 연구, 지식협력 및 재정지원사업 등의 성과물을 통합 관리하고 공유확산하기 위한 시스템을 말한다.

② ‘성과물’은 학내 각 부서에서 생산된 사업계획서, 연구보고서, 조사보고서, 결과보고서, 간행물, 홍보물 등 문서, 저작물 및 전자정보 등의 형태로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유무형의 성과 자료 일체를 말한다

③ ‘부서’란 대학원, 대학, 처,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기관을 말하며 ‘보조기관’이란 학과, 행정부서의 팀 및 이에 준하는 기구를 말한다.

제3조(관리·운영 주체) ① 성과공유시스템의 총괄 관리 및 운영은 조사연구부에서 담당한다.

② 각 성과물의 등록 및 관라운영은 각 성과물 생산 부서에서 담당한다

③ 각 부서는 성과물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조사연구부에 담당자 권한을 요청하여야 한다

제4조(등록 대상) ① 성과물 등록 대상은 학내 각 부서에서 생산한 주요 성과물로 한다.

② 등록 대상 성과물 유형은 다음과 같다.

1. 사업계획서
2. 결과보고서
3. 간행물 및 홍보물
4. 그 밖에 성과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

제5조(등록 절차) ① 각 부서는 성과공유시스템을 통해 자율적으로 성과물을 상시 등록 관리할 수 있다

② 성과물을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필수로 입력하여야 한다

1. 성과물 제목
2. 발간일 및 관리부서
3. 기관 발간번호(정기 발간 성과물에 한함)
4. 관리부서 연락처 및 이메일
5. 성과물 유형 및 주제 분류
6. 공개 여부
7. 성과물 개요
8. 성과물 파일

③ 등록된 성과에 오류가 있거나, 누락된 사항이 있는 경우 조사연구부는 각 부서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6조(공개 범위) ① 공개 범위는 공개 대상자 및 공개 내용에 따라 전체 공개, 부분 공개, 비공개로 구분한다.

1. 전체 공개: 전체 대상자 및 전체 내용을 공개
2. 부분 공개: 일부 대상자 또는 일부 내용을 공개
3. 비공개: 전체 비공개

- ② 공개 범위는 성과물 등록 시 각 부서에서 설정한다. 다만, 필요시 조사연구부는 각 부서에 공개 범위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.
- ③ 부분 공개 및 비공개 성과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에 의하여 각 부서에 공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부서는 부서장의 승인을 얻어 공개 여부를 결정한다.

##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5년 3월 17일부터 시행한다.